

영등포구의회  
제22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영등포  
민간위탁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0. 3. 27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195호로 2020년 2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청년 종합지원 플랫폼 「서울청년센터 영등포」를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3. 주요 내용

#### ○ 대상시설

연번	시설명(가칭)	소재지	규모
1	서울청년센터영등포	영등포구 신길로 204 2층	347㎡

○ 이용대상 : 서울시 청년(19세 ~ 39세)

○ 위탁사무 : 서울청년센터영등포 시설 관리·운영 일체

-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, 지역청년 역량강화, 청년커뮤니티 지원, 시설유지관리

- 위탁기간 : 2020년 7월 ~ 2022년 6월 (2년)
- 운영방법 :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운영
- 운영인력 : 총 6명(시설장1, 직원 5)
- 소요예산(2020년 기준, 6개월): 금288,600천원(시비)

구 분		예 산 액 (단위:천원)	세 부 내 역	비고
민 간 위탁금	계	288,600		
	인건비	102,000	인건비, 4대 보험료 등	
	사업비	137,000	청년역량강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	
	운영비	49,600	공공요금, 시설관리비 등	

- 관련근거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  -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  - 「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 
(위탁운영 등)
 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22조(청년 시설의  
설치 및 운영)
 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 
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#### 4. 검토의견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  
-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의 운영을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.
  
- 다만, 민간위탁체 선정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**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
**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,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, 직업 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3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

**제22조(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)**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,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⑤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(대표자)
2.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

### 4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**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**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<개정 2013.12.12>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.  
<개정 2013.12.12>

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